

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| 1,159,153,701 | 34,774,611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| 981,840,385   | 29,455,212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177,313,316   | 5,319,399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154,120,385   | 4,623,612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32,736,970    | 982,109   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55,105,877    | 1,653,176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66,277,538    | 1,988,326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| 23,192,931    | 695,788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| 294,000       | 8,820     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7,952,719     | 238,582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3,865,013     | 115,950 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 | 6,947,224     | 208,417    |
|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3,623,075     | 108,692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510,900       | 15,327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832,27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